#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제 2 소 위 원 회 심의 · 의결

**안 건 번 호** 제2025-201-24호

안 건 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청주흥덕경찰서 (사업자등록번호 : )

대표자

의결연월일 2025. 1. 8.

### 주 문

- 1.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 권고한다.
  - 가. 경찰청과 협의하여 경찰관 간 유선으로 수사 협조하는 경우에 대한 확인 절차를 내부관리계획에 마련한다.
  - 나. 개인정보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한다.
  - 다. 피심인은 개선 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이행 결과를 제출한다.

### 이 유

### I. 기초 사실

피심인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(법률 제19234호, 2023.9.15. 시행, 이하 '보호법'이라 한다) 제2조제6호의 공공기관으로,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.

#### < 피심인의 일반현황 >

피심인명	사업자등록번호	대표자 성명	주소	직원 수
청주흥덕경찰서				

#### Ⅱ. 사실조사 결과

### 1. 조사 배경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신고가 접수('24.4.30.)되어 사실조사를 진행('24.8.16.~10.24.)하였으며,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### 2. 행위 사실

### 가. 개인정보 수집 이용 현황

피심인은 2024년 8월 28일 기준 경찰청이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해 수집한 ' '정보를 이용하고 있다.

개인정보파일 (시스템)	수집ㆍ이용 항목	수집일	보유건수(명)

### 나.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

### 1) 유출 규모 및 항목

피심인이 경찰관 사칭범에게 속아 유선으로 개인정보를 전달하여 총 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, 유출 항목은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이다.

## 2) 유출인지 및 대응

일시			피심인의 유출 인지・대응 내용
'24.	'24. 4.27. 16:46		A 경감을 사칭한 사람이 봉명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전산 시스템이 다운되었다며 급히 주민조회를 요청해 B 경위는 7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전달함
			B 경위는 업무용 휴대폰 또는 무전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전회를 이용한 것에 수상함을 느껴 A 경감에게 유선으로 사실 관계 확인 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함
		13:30	개인정보 포털에 유출 신고
	4.30.	15:50	청주흥덕경찰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내용 게시 * 해외거주자인 정보주체(1명)에 대한 유출 통지 갈음
		16:21	정보주체(6명)에게 유출 통지 완료(유선, 문자, 우편)
	5.1	-	「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강화 지시(공문)」하달 및 교육 실시
	5.3.	1	「개인정보 유출 예방 및 유출 시 대응절차 숙지 재강조 지시(공문)」하달 및 교육 실시
	5.9.	-	「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강화 지시(충북경찰청 공문)」에 따른 폴조회 관리 강화 점검 보고 실시
	5.10.	-	「청주흥덕서 자체 개인정보 유출사고 모의 대응 훈련 실시 계획(공문)」수립하여 각 부서별 맞춤형 사례로 훈련 실시

### 3) 유출 경위

경찰관 사칭범이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긴급 상황이라며 주민 조회를 요청해 이에 속은 피심인이 특정인의 정보를 제공하였다.

#### 3. 개인정보의 취급·운영 관련 사실관계

피심인은 경찰관 사칭범에게 속아 유선으로 7명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있으며,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찰 수사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 사안과 같이 유선 전화를 통해 다른 경찰관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앞으로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.

피심인은 내부관리계획에 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다른 경찰관의 유선 협조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 하지 않았다.

#### Ⅲ. 위법성 판단

### 1. 관련 법 규정

보호법 제29조는 "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, 접속기록 보관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고, 같은 법 시행령1) 제30조 제1항은 "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."라고 규정하며 "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다음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점검(제1호)"을 규정하고 있다.

또한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2)」(이하 '고시') 제4조제1항은 "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

<sup>1)</sup> 대통령령 제34309호, 2024. 3. 15. 시행

<sup>2)</sup>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-6호, 2023. 9. 22. 시행

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"라고 규정하며 "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(제3호)"을 규정 하고 있다.

#### 2. 위법성 판단

#### 가. 유선으로 개인정보를 전달한 행위

피심인은 경찰관 사칭범에게 유선으로 7명의 개인정보를 알려준 사실이 있으나, ▲사칭범이 전직 경찰로서 경찰 용어 사용에 능숙해 쉽게 속여 발생한 데 따른 인적 과실 성격이 있는 점, ▲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에 대한 내부 감사 후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점, ▲현재까지 정보주체의 추가적인 피해 신고가 없는 점, ▲보호법에 따른 유출 통지 및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, ▲사후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예방 및 유출 시 대응에 관한 공문을 하달하고 전직원 교육을 실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분할만한 중대한 위반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과징금 및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.

### 나. 내부관리계획 상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보완 필요

피심인은 보호법 제2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, 「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기준」제4조제1항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에 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나,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찰 수사의 특성을 감안할때 이 사안과 같이 유선 전화를 통해 다른 경찰관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.

### Ⅳ. 처분 및 결정

#### 1. 개선 권고

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보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 권고한다.

- 가. 경찰청과 협의하여 경찰관 간 유선으로 수사 협조하는 경우에 대한 확인 절차를 내부관리계획에 마련한다.
- 나. 개인정보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한다.
- 다. 피심인은 개선 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이행 결과를 제출한다.

#### V. 결론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